

kiri Weekly

2012.01.02 제163호

이슈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안)과 개선방향

포커스

남·북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과 시사점

금융보험 해설

자본시장제도 이해(6):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국내금융 뉴스

2012년 1월 업황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하락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제정 및 개정 확정

12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정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경기지표 혼조 양상

유럽 _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_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일본 _ 일본 정부, 2012회계연도 차입 예산안 발표

중국 _ 중·일 화폐협정 체결, 위안화 위상 부상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안)과 개선방향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될 예정임.**
 - 제도시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2월 22일 개최되어 차등평가모형 및 지표선정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각 금융권역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짐.
- **차등평가모형은 부보금융회사를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등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임.**
 - 차등평가모형은 정량평가(80%)와 정성평가(20%)로 구성
 - 평가방식은 최종 산출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방식을 통해 3단계로 차등
 - 할인 및 할증의 차등 폭은 시행령에 허용된 범위인 표준요율 대비 10%로 결정
- **정량평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 능력, 손실회복능력으로 구분하고 정성평가는 질적 요인 평가항목과 정량평가 보완항목으로 구성함.**
 - 정보공개에 경우 부분공개방식을 채택하여 기본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일반에 공개하되, 금융회사에는 최종등급 및 보험료율만 통보하고, 항목별 등급 및 점수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함.
-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안)의 무리없는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각 금융권역별 정량지표 선택과 선형보간법 사용의 적정성 검토
 - 차등평가모형 조정 시 각 금융업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금융권역 특성을 반영
 - 금융회사 자신의 재무건전성 관련 취약점 파악을 위해 항목별 등급 및 점수도 개별회사에 통보
 - 예금보험료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할증은 점진적으로 적용
 -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기준을 일원화

1. 검토배경



가. 현 예금자보호제도의 한계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예금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29일 은행만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어,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는 등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 중임.
 -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부터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을 포괄하는 통합예금보험제도로 개편됨.
 - 2003년부터 신예금보험기금 체제가 출범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¹⁾을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 각 금융권역별로 상한 및 하한이 있는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는 목표기금제도²⁾가 시행됨.
- 그러나 현행 고정보험료를 체계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회사와 불량한 회사가 동일한 예금보험료를 적용받게 되어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유인을 왜곡시키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
 -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권역별로는 차등화(〈표 1〉 참조)되어 있으나, 권역 내에서는 회사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은 고정보험료율 체계임.
 - 동 요율체계는 경영을 건전하게 한 금융회사가 부실한 금융회사를 사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1)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정)를 정리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함.
 2) 각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해당 권역의 금융회사들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초과 적립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

〈표 1〉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 산정산식

부보금융기관	산식
은행	분기별 보험료 =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8/1만 × 1/4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1만 ¹⁾
보험회사	연간 보험료 = (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 15/1만 ²⁾
종합금융회사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1만
상호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40/1만

주: 1) 고객예탁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 고객예탁금에 대하여는 요율을 30% 인하함.

2)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 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보험료율을 조정함.

자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11.7.7 시행) 별표1.

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

■ 고정보험료율 체계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나 경영안정성을 반영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 2009년 개정법에서 5년 이내 시행이 의무화³⁾됨.

- 2009년 개정 「예금보험법」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각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⁴⁾
- 이를 위해 표준보험료의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⁵⁾

■ 이에 차등보험료율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시행을 위한 측정방법 및 지표들을 공개하고 2011년 12월 22일 공청회를 진행함.

-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수행된 차등평가모형 및 지표선정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각 금융권역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져 차등요율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활발히 논의됨.
- 이번 공청회에서 개선된 각 금융권역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차등보험료율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계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별로 시행하도록 함.

4)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후단.

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한편,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다음을 충족하도록 산정하여야 함.
 -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현재 재무건전성 및 위험수준이 적절하게 반영함.
 - 각 부보금융회사가 미래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를 자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
- 따라서 본고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토의 과정에서 지적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



가. 차등평가모형

- 차등평가모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를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등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하여 부과함(표 2) 참조.
 - 차등평가모형은 정량평가(80%)와 정성평가(20%)로 구성
 - 평가방식은 최종 산출점수에 따른 절대평가방식을 통해 3단계로 차등
 - 할인 및 할증의 차등 폭은 시행령에 허용된 범위인 표준요율 대비 10%로 결정
- 정량평가의 경우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위 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가중치를 각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부여함(표 2) 참조.

〈표 2〉 차등평가모형의 구성

정량 평가 (80점)	위기대응능력(30점)	자본적정성·유동성 관련 지표로 구성
	건전성관리능력(25점)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로 구성
	손실회복능력(25점)	수익성 관련 지표로 구성
정성 평가 (20점)	질적요인 평가(10점)	금융회사의 질적 특성을 감안한 리스크평가
	정량평가 보완(10점)	정량평가 지표의 경직성을 보완 (매년 지표 변경 가능)
평가 방식	(절대평가)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실시	
차등 단계	(3단계) 적정 등급수로 금융기관의 등급 귀속감을 높이고, 건전경영 유도 효과 기대	
차등폭	(±10%) 시행령상 허용범위를 적용	

자료: 예금보험공사(2011. 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 최근 10년간(2000. 3~10. 6) 금융회사 정보를 기초로 한 통계분석⁶⁾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선정한 후 지표별로 분포의 20 및 80 percentile 값을 각각 최소·최대 임계치로 설정하고 지표별 점수를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여 산정(〈표 3〉 참조)함.
- 시스템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는 대형은행(자산 200조 원 초과)에 대한 외화유동성비율, 업계평균 대비 초과자산 성장률을 추가지표로 선정⁷⁾함.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⁸⁾의 경우 별도의 평가그룹으로 분류하고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계량화하여 정량평가에 반영함.

〈표 3〉 지표별 점수 산정식

구분	점수 산정식
리스크와 비례하는 경우	$S = (Max - V) \times 100 / (Max - Min) \quad (0 \leq S \leq 100)$
리스크와 반비례하는 경우	$S = (V - Min) \times 100 / (Max - Min) \quad (0 \leq S \leq 100)$

주: S는 산정점수, V는 측정치, Max는 최대임계치, Min은 최소임계치
 자료: 예금보험공사(2011. 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 정성평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질적 특성을 감안한 질적 요인 평가항목과 정량지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정량평가 보완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세부지표를 선정함.

6) 실제 부실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한 logit 모형과 주요 변수들 간의 Granger-causality 검증을 수행함.
 7) 금융위원회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선정기준에 따라 권역 및 금융회사의 선정기준은 가변적임.
 8) 외국계 은행·증권사·손보사 국내지점(단, 외국계 생보사 국내지점인 AIA는 국내사와 동일그룹으로 평가)

- 질적 요인 평가항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항 중심⁹⁾으로 감점방식으로 평가하되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상시감시 결과 등을 보완적으로 반영
 - 정량평가 보완항목은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당국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량지표 이외에 중요하다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¹⁰⁾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차등평가 시 통보
- 평가방식에서 최종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는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최종등급은 3단계로 나누며 할인·할증 폭은 각각 10%로 결정함.
- 최초의 등급산정 점수는 보험료 수입 및 등급별 회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등급산정 점수 변경주기는 5년
 - 절대평가방식에 의해 건전성 개선 시 모든 금융회사가 1등급이 가능
 - 3등급 체계를 통해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에서 10% 할인,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부과, 3등급은 표준보험료율에서 10% 할증

나. 평가절차와 정보공개

- 평가절차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권역별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차등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거침.
- 평가점수의 적정성 검증, 평가결과의 일관성 유지,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내부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¹¹⁾된 (가칭)차등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적정성, 세부기준 등 평가방법의 변동사항 등을 심의
- 정보공개에의 경우 기본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일반에 공개하고 최종평가등급 및 보험료율은 해당 금융회사에만 통보하는 부분공개방식을 채택함(〈표 4〉 참조).
- 금융회사에는 최종등급 및 보험료율만 통보하며, 항목별 등급 및 점수는 통보대상에서 제외

9) 정보시스템 운영 적정성(전산사고 등), 금융당국 제재현황(금융위 제재 등), 조직의 안정성(장기 노사분규 등), 금융소비자와의 분쟁 등이 세부지표가 될 수 있음.

10) 금년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권은 PF대출규모 및 연체율 지표를 보완항목으로 선정

11) 신용평가전문가, 회계전문가, 학계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

〈표 4〉 정보공개 범위 및 통보 사항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평가기준	기본 항목	공개	공개	-
	세부 항목	공개	부분공개	-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 점수	통보 제외	통보 제외	총점 통보

자료: 예금보험공사(2011. 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다. 부보보험회사의 차등보험료율 평가지표

■ 보험산업 평가에 사용되는 정량지표 역시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의 3부문으로 구분되어 각각 30%, 25%, 25%의 비율로 평가에 반영되고, 부문 내 지표 간에는 동일 가중치를 부여함(〈표 5〉 참조).

- 위기대응능력 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비율, 유동성비율이 사용됨.
- 건전성관리능력 지표는 가중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사용됨.
- 손실회복능력 지표는 매출이익률, 효력해약상실률(생보), 위험손해율(손보)이 사용됨.

〈표 5〉 보험산업 정량평가 지표

1. 생명보험

부문(가중치)	지표	산식	임계치	
			최소	최대
위기대응능력 (30)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100	317
	수정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90	311
	유동성 비율	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	144	426
건전성 관리능력 (25)	위험가중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총자산	22	59
	가중부실자산비율	가중부실자산/건전성분류자산	0.0	0.8
손실회복능력 (25)	매출이익률	당기순이익/수입보험료	0	8
	효력상실해약률	효력상실해지액/ (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11	20

2. 손해보험

부문(가중치)	지표	산식	임계치	
			최소	최대
위기대응능력 (30)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100	216
	수정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90	210
	유동성 비율	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	111	241
건전성 관리능력 (25)	위험가중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총자산	53	66
	가중부실자산비율	가중부실자산/건전성분류자산	0.2	1.3
손신회복능력 (25)	매출이익률	당기순이익/수입보험료	0.0	3.2
	위험손해율	발생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	94	104

자료: 예금보험공사(2011. 9), “차등보험료율제도 설명자료”.

■ 보험산업에 대한 정성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 보완항목을 위한 지표로는 보험금지급율(생·손보 공통) 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위한 지표가 각각 선정될 예정임.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율, 3년간 이차이익비율, 3년간 해약율 추이, 초과 지급보험금 증가율, 중장기 금리리스크 등이 후보지표로 사용됨.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율, 수입보험료 증감율, 3년간 유가증권 수익율 추이, 자본금 대비 우발(보증) 채무비중 등이 후보지표로 사용됨.

3. 예금보험공사 시행(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가 재무건전성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동 제도 시행(안)을 무리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함.

- 아울러, 목표기금제와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문제 및 권역별 예금보험료의 적정성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가. 정량평가 지표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

■ 예금보험공사 시행(안)에 포함된 정량평가에서 각 금융업권 정량지표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선형보간법」의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수준(150 또는 200) 이상일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최소 임계치¹²⁾ 사이에 「선형보간법」으로 정량점수를 계산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 평가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함.
 -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일정 수치 이상의 지표값에 대해서는 만점을 부여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보다 적절한 방법임.
- **현 예금보험공사 시행(안)의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 및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금융회사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전반적인 지표 선정 시 각 금융권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 정량평가 지표의 선정 및 임계치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업권간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동연구가 필요함.

나. 향후 각 금융업권 전문가의 차등보험료율제도 조정과정 참여 필요

- **각 금융권역의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스템 개발과 차등평가모형 및 제도에 관한 시뮬레이션 작업의 조정(calibration) 단계에서 각 금융업권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함.**
- 현재까지의 차등보험료율 도입과정에서 보험권역 전문가 등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투명성이 결여된 면이 있음.
 - 향후 차등보험료율의 취지에 맞는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권역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다. 항목별 등급 및 점수의 개별회사 통보 필요

- **항목별 등급 및 점수를 개별회사에 통보하여 금융회사가 각 항목별로 스스로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부보금융회사가 미래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현 시행(안)의 경우 평가 결과의 총점 및 등급은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통보되지만, 항목별 등급 및 점수 등은 통보되지 않음.

12) 지급여력비율의 최대·최소 임계치는 생명보험은 최소임계치가 100, 최대임계치가 317이며, 손해보험은 최소임계치가 100, 최대임계치가 216임.

- 개별 보험회사가 항목별 취약점을 개선할 수 없다면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라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

라. 현 보험료 수준과 비교하여 보험회사에 줄 수 있는 충격 고려

- 할증을 통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할인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도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으므로 할증 폭은 작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넓히는 것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도울 수 있을 것임.
 - 현재 설립 후 10년 이상 된 보험회사 중 누적결손이 없는 경우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고 있으나, 현 시행(안)대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실시할 경우 5% 할인 부분이 사라져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할증효과가 발생함.
 - 또한, 10% 할증을 받을 경우 중소보험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특히 크고, 이에 따른 경영부담 기중으로 제도의 취지와 반대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할증의 범위를 일단 2.5~5% 정도로 낮추어 시작하는 것이 제도가 주는 충격을 줄이면서 제도의 안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³⁾

마.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수검과정에서의 부담 문제

-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향후 리스크실태평가)와 중복되는 면이 많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라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므로 일원화하는 것이 부보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함.
 - 또한,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바. 권역별 목표기금제와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 특별계정 문제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올해부터 목표기금 상한에 도달하여 생명보험 고유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면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특별계정(이하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들어가는 45/100¹⁴⁾ 부분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함.

13) 2007년 예금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도 2.5%의 할증률이 제시된 바 있음.

- 적정수준으로 예금보험료를 적립한 금융권역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목표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목표를 달성하여 예금보험료를 면제받는 상황임에도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추가로 예금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위한 생명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납입은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차등보험료율을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
- 더욱이, 현 예금보험공사 시행(안)대로 할 경우 할증받는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정 예금보험료는 면제받으면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는 할증부분만큼 더 내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됨.
-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 산정기준이 금융권역별로 상이할 이유가 없으며, 같은 요율로 분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될 것임.

사. 예금보험료율의 권역별 시스템리스크 반영

-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시스템리스크가 각각 다르며, 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역의 예금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성 유지에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라는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반영하여 권역별 예금보험료율의 산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 금융권역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논의 내용이 추후 우리나라 예금보험료율 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iri](#)

14) 개정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